

인천지방법원 2024. 11. 21 선고 2022가합52408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1. A

2. B

3. C

4. D

5. E

6. F

7. G

8. H

9. I

10. J

11. K

12. L

13. M

14. N

15. O

16. P

17. Q

18. R

19. S

20. T

21. U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상현

원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재상, 이상보, 서고은

피고 1. V

2. W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경인

담당변호사 박소정, 박요셉

피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진

변론 종결 2024. 10. 10.

판결 선고 2024. 11. 21.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1. 피고 V와 X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증여계약을,
 - 가. 1) 원고 A, B, F, G, I, J, K, L, Q, S와 피고 V 사이에서, 각 56,000,000원의 한도에서 취소한다.
 - 2) 피고 V은 위 가.항 원고들에게 각 56,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나. 1) 원고 C와 피고 V 사이에서 8,262,000원의 한도에서 취소한다.
- 2) 피고 V은 원고 C에게 8,262,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1) 원고 D와 피고 V 사이에서 37,218,000원의 한도에서 취소한다.

2) 피고 V은 원고 D에게 37,218,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라. 1) 원고 E와 피고 V 사이에서 28,759,260원의 한도에서 취소한다.

2) 피고 V은 원고 E에게 28,759,26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마. 1) 원고 H와 피고 V 사이에서 27,279,000원의 한도에서 취소한다.

2) 피고 V은 원고 H에게 27,279,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바. 1) 원고 M와 피고 V 사이에서 7,420,000원의 한도에서 취소한다.

2) 피고 V은 원고 M에게 7,42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사. 1) 원고 N와 피고 V 사이에서 15,666,000원의 한도에서 취소한다.

2) 피고 V은 원고 N에게 15,666,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아. 1) 원고 O와 피고 V 사이에서 42,099,000원의 한도에서 취소한다.

2) 피고 V은 원고 O에게 42,099,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자. 1) 원고 P와 피고 V 사이에서 23,044,500원의 한도에서 취소한다.

2) 피고 V은 원고 P에게 23,044,5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차. 1) 원고 R와 피고 V 사이에서 38,296,000원의 한도에서 취소한다.

2) 피고 V은 원고 R에게 38,296,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카. 1) 원고 T와 피고 V 사이에서 33,662,000원의 한도에서 취소한다.

2) 피고 V은 원고 T에게 33,662,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타. 1) 원고 U와 피고 V 사이에서 12,521,000원의 한도에서 취소한다.

2) 피고 V은 원고 U에게 12,521,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W와 X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증여계약을,

가. 1) 원고 A, B, D, E, F, G, H, I, J, K, L, N, O, P, Q, R, S, T, U와 피고 W 사이에서, 각 9,910,000원의 한도에서 취소한다.

2) 피고 W는 위 가.항 원고들에게 각 9,91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1) 원고 C와 피고 W 사이에서 8,262,000원의 한도에서 취소한다.

2) 피고 W는 원고 C에게 8,262,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1) 원고 M와 피고 W 사이에서 7,420,000원의 한도에서 취소한다.

2) 피고 W는 원고 M에게 7,42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X는 X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특정 물품의 공동구매를 진행하면서 홈페이지 가입회원들로부터 일정기간 특정 물품에 대한 공동구매 물품대금을 투자받아 그 투자금의 1.5배 내지 2배 정도의 금액을 위 회원들에게 반환하여 주기로 약정하였고, 원고 U도 X와 사이의 이러한 투자약정에 따라 X에게 12,085,000원을 투자하였으나 이를 반환받지 못하였다. 이에 원고 U는 X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가소118710호로 약정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21. 7. 7. 'X는 원고 U에게 12,08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6.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 판결은 확정되었다(이하 위 판결에 의한 채권을 '약정금채권'이라 한다).

나. 또한 X는 위 홈페이지를 통해 시중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특정 물품의 공동구매를 공지하여 홈페이지 가입회원들로부터 공동구매 물품대금을 수령하여 왔으나 정상적으로 물건을 공동구매하여 제공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해당 금원의 일부를 사용하여 일부 공동구매자들에게 물건을 배송하여 주며 공동구매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나머지 금원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었음에도 위와 같은 저렴한 가격에 공동구매가 가능한 것처럼 공동구매자들을 기망하면서 위 공동구매 물품대금 상당액을 편취하였다.

다. 원고 U를 제외한 원고들은 X로부터 위 나.항과 같이 기망당하여 물품대금을 지급함으로써 손해를 입었고, 이에 X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21가합54384호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21. 10. 15. 'X는 위 원고들에게 아래 표의 '입금한 금액(원)'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이에 대하여 2021. 10.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 판결은 확정되었다(이하 위 판결에 의한 채권을 '손해배상채권'이라 한다).

1 A	96,400,000
2 B	86,638,000
3 C	8,262,000
4 D	37,218,000
5 E	28,759,260
6 F	100,744,000
7 G	62,850,000
8 H	27,279,000
9 I	126,325,000
10 J	67,420,000
11 K	57,399,000
12 L	154,893,000
13 M	7,420,000
14 N	15,666,000

1 A	96,400,000
15 O	42,099,000
16 P	23,044,500
17 Q	75,144,000
18 R	38,296,000
19 S	116,865,000
20 T	33,662,000
총계	1,206,383,760

라. 피고 V는 X의 어머니이고, 피고 W는 X의 배우자인 Y의 어머니이다.

마. 별지 목록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 V 명의의 Z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피고 V 명의의 다른 계좌로 합계 5,600만 원이 송금되었다(이하 위 Z은행 계좌를 '제1 계좌'라 하고, 위 각 송금행위를 합하여 '제1 송금행위'라 한다).

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와 같이 2021. 6. 23. Y 명의의 Z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서 피고 W 명의의 계좌로 2,000만 원이 송금되었고, 그 후 피고 W 명의의 계좌에서 Y 명의의 위 계좌로 합계 1,009만 원이 입금되었다(이하 Y 명의의 위 계좌를 '제2 계좌', 위 송금행위를 '제2 송금행위'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거나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2024. 4. 24.자 Z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U는 X에 대하여 약정금 채권이 있고, 원고 U를 제외한 원고들은 X에 대하여 손해배상채권이 있는데, X는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 V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와 같이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피고 V에게 제1 송금행위를 하여 합계 5,600만 원을 증여하였고, 피고 W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와 같이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피고 W에게 제2 송금행위를 하여 2,000만 원을 증여하였으므로, X와 피고들의 위 각 증여계약은 X의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나. 따라서 X와 피고 V 사이의 위 증여계약 및 X와 피고 W 사이의 위 증여계약 중 991만 원(= X가

피고 W에게 증여한 2,000만 원 - X가 피고 W로부터 입금받은 1,009만 원) 부분은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며(대법원 1998. 5. 12. 선고 97다57320 판결 등 참조), 채무자의 사해의사 역시 추정된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참조).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금전 지급행위를 증여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수익자가 이를 다투고 있는 경우, 이는 채권자의 주장사실에 대한 부인에 해당하므로 위 금전 지급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금전 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하고, 그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원고들은 X가 피고들에게 제1, 제2 송금행위를 통해 증여를 하였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들은 제1 송금행위는 피고 V이 자기거래를 한 것이고 제2 송금행위는 Y이 피고 W와 금전거래를 한 것일 뿐 X가 피고들에게 해당 금원을 증여한 것이 아니라고 다투고 있는바,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앞서 1.항에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만으로는 제1, 제2 송금행위가 X의 피고들에 대한 증여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X가 제1, 제2 송금행위의 행위자라거나 피고 V 명의의 제1 계좌와 Y 명의의 제2 계좌의 실질적인 사용자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다.

나) 제1 계좌에는 피고 V의 아들 AA으로부터 2021. 5. 13. 2,000만 원이, 2021. 5. 25. 1억 2,000만 원이 각 입금되었고, 이를 재원으로 제1 송금행위가 이루어졌으며, 제2 계좌에는 2021. 6. 8. AB로부터 8,000만 원이, 2021. 6. 9. 피고 V 명의의 대출금 25,121,541원이 각 입금되었고,

이를 재원으로 제2 송금행위가 이루어졌는데, 위 각 입금액이 실질적으로 X 소유의 돈이라거나 X의 의사에 따라 제1, 제2 송금행위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2) 따라서 제1, 제2 송금행위가 X의 피고들에 대한 증여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김양희

판사김연수

판사이순공

별지